

『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·사용·관리 및 시설물 설치·유지관리, 활용,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시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·고시 내용
 -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/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/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 - 도로명주소 고지·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(안 제5조)
- 자체 제작·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
 -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·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 -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규정(안 제8조)

-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
 -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토록 함 (안 제9조)
 -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등에 관한 사항
 -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(안 제11조)
 -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(안 제12조 및 제13조)
 -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)
-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-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·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(안 제15조)
 -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, 절차, 지도 감독 규정 (안 제16조 내지 제18조)
-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
 -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, 평가항목, 배점기준을 규정 (안 제19조 내지 제21조)
-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
 - 도로명주소의 홍보·교육,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(안 제22조 및 제23조)
- 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
 - 새주소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4조 내지 제32조)
 -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

4. 참고사항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,시행규칙
-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-1248(2007. 8. 9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배열된 지번을 찾기 쉽고, 알기 쉬운 미래사회에 맞는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
-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주소가 법률 행위상의 주소가 되도록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
- 도로명 변경절차, 건물번호판 규격, 도로명의 사용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정하고자하는 안임.
- 제안이유에서 명시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, 다만,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.